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경제부흥, 국민행복, 문화융성, 평화통일 기반 구축

희망의 새시대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

보도자료

2013년 5월 1일(수) 10:0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부 무역정책과 권오정 과장(02-2110-4829), 임형진 서기관(5312)
기재부 정책조정총괄과 나석권 과장(044-215-4510), 박재진 서기관(4511)

'무역, 투자 확대로 성장사다리, 희망일자리' 만든다.

- 5.1(수), 대통령 주재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최 -

〈 수출 중소·중견기업 지원확대 〉

□ 추진 배경

○ 최근 세계경기 침체, 엔低 심화 등 대외 무역환경이 악화되어 **1/4분기 우리 수출은 정체상태**에 머물러 있는 상황

○ 특히 **작년 하반기 시작된 엔低 현상**은 일부 품목 수출 둔화, 채산성 악화 등 **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**을 미치기 시작

○ 이에 따라 **수출 중소·중견기업은 채산성 악화와 수출경쟁력 약화로 매우 어려운 상황**에 직면하고 있어 **특단의 애로해소 대책이 시급히 필요**

【 수출기업의 여건과 주요애로 】



□ 특별대책 주요내용

① [무역금융 부족해소] 수출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·중견기업, 중소형 해외건설·플랜트 등이 무역금융 11.1조원*의 특별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.

* '13년 수출 중소·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규모 : (당초) 71 → (확대) 82.1조원

○ **(재원)** 추경(1,500억원), 시중은행 특별출연*(3,000억원) 등 **4,500억원**

* 시중은행 특별출연규모(억원) : (기업은행) 1,000, (외환은행) 1,000, (KB) 1,000

○ **(지원)** 엔低 대응(1.3조원) 및 수출 중소·중견기업(6.3조원), 중소형 해외건설·플랜트(1조원), 조선기자재 등 선박금융(2.5조원) 등 **총 11.1조원**

지원대상	당초계획(조원)		추가(조원)	재원충당(억원)
① 수출 중소·중견기업 (엔低 대응)	수은	25	0.5	추경예산 500(자본금)
	정금공	0.2	0.1	기존예산 활용
	신보	7.2	-	기존예산 활용
	무보	35 (1.2)	5 (1.3)	추경예산 500(출연금) (추경예산 60)
			2	시중은행 1,200(특별출연)
② 중소형 해외건설·플랜트 수주	무보	0.6	1	시중은행 600(특별출연)
③ 조선기자재 등 선박금융	수은	15.5	0.5	추경예산 500(자본금)
	무보	5	2	시중은행 1,200(특별출연)

② **[엔低 대응 강화]** 엔저 대응을 위한 **환변동보험 확대**(당초 1.2조원 + 1.3조원) 외에도 **FTA 원산지 관리 지원 강화**를 통한 FTA활용 확대, **수출마케팅** 지원 등으로 **가격경쟁력을 보완**

① [FTA 원산지관리] 스스로 FTA 원산지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관리단계별 밀착 컨설팅을 받아 원산지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FTA 특혜관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

○ **(현장맞춤형 컨설팅)** 기업이 **원산지 관리**를 할 수 있도록 **신청기업을 찾아가서 전과정 지원**('12년 2,329건 → '13년 3,000건 이상)

*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와 16개 지역센터의 관세사, 원산지관리사 등 보강
 - 컨설팅 전문인력 : ('13) 24 → ('14 목표) 70 → ('15 목표) 140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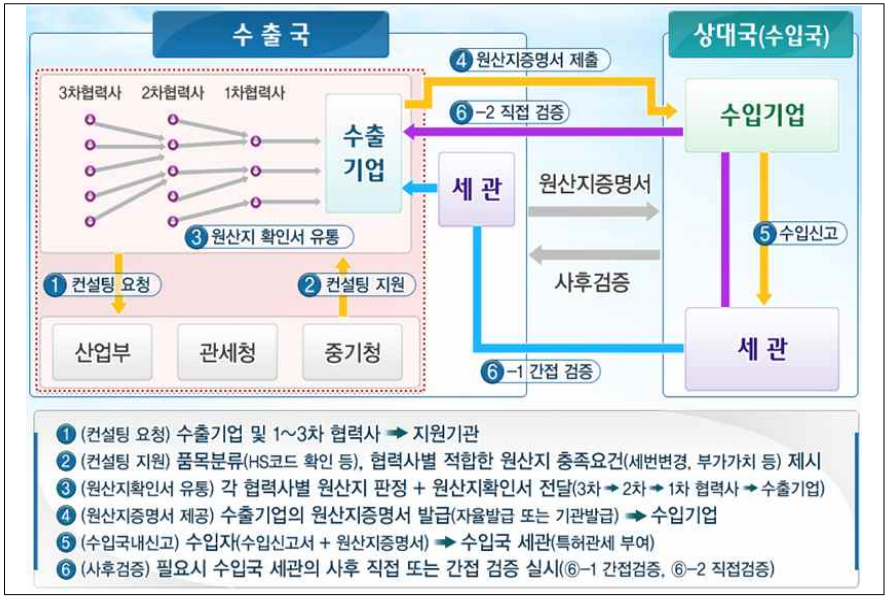
○ **(인센티브 강화)** 직접 수출자가 아닌 **2·3차 협력사는** FTA특혜 관세 혜택은 없는 반면, **확인서 발급·유지 부담이 큼을 감안**하여 **인센티브*** 보강

* 현재는 원산지확인서 발급시 건당 1만원, 연간 30만원까지 부가세 세액공제

○ **(사후검증 대응지원)** 발급절차가 상대적으로 쉬운 **자율발급 기업의 사후검증 대비 강화**를 위한 **검증대응체계 구축**

* 신고창구개설('13.5월), 온라인 콘텐츠 및 자가검증툴 제공(상반기) 등

【 FTA 원산지 증명서(확인서) 유통과정 】



② **[내수·수출초보기업 집중지원] 수출을 대행하는 전문무역상사 활성화와 현장중심 애로해소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해외시장에 제품을 팔 수 있게 됩니다.**

○ **(전문무역상사 활성화)** 내수·수출초보기업의 **수출 대행과 FTA 활용 지원**을 위한 **전문무역상사 활성화**

* 업종별 협동조합 활성화, 대·중소기업 공동출자 수출전문기업* 등 다양한 형태의 전문무역상사 설립 지원

*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전문무역상사 지정·육성 제도 도입('13.12월)

○ **(맞춤형 지원인프라)** 기술·디자인 등 **기초수출역량 강화, '수출 맛보기*' 프로그램 제공** 및 **수출현장애로 해결(이동 KOTRA)**

* 바이어 발굴매칭, 계약실무 지원 등을 통해 내수기업에게 최초 수출경험 제공 (무역협회 수출 스타트업(Start-Up)사업, KOTRA 수출첫걸음사업)

【 내수·수출초보기업 지원 내용 】



③ **[손톱 밑 가시뽑기]** 수출 중소기업이 수출활동 과정에서 겪는 애로로 작용하는 가시 5가지를 제거하는 한편,

* ① 조선기자재업계의 안정적 일감 확보, ②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른 영문 주소 안내서비스 강화, ③ 온라인 B2C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, ④ 전자무역 이용 관련 무역업계 애로해소, ⑤ 단순 네트워크 장비 전략물자 제외 등

○ 중소기업 현장애로와 정책이 환류되는 **현장중심 수출지원체계 구축**

- **(해외) 재외공관**의 **무역·통상 기능**을 강화하여 현지 진출기업·수출유관기관을 망라한 **"공관별 무역투자진흥회의"**(분기별) 개최

- **(국내)** 수출역량별 맞춤 서비스 지원을 위해 **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**를 **중심**으로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**원스탑 수출지원 체계** 구축

【 현장중심 원스탑 수출지원체계 】



④ **[新무역 정책방향 제시]** 금번 보고를 통해 산업부는 그간의 양적 성장전략만으로는 무역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, 내수와의 연계 등에 기여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, 이를 해결하기 위한 '新무역' 정책방향*을 제시하면서,

* **① 향후 수출의 근간인 대기업 이외에도 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 확대,**
② 통상협력·산업·투자와 무역을 연계하여 새로운 수출기회 창출

○ 이러한 정책방향에 맞춰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금년 중 '무역투자진흥회의'에서 논의할 계획이며,

○ 금번 회의에서는 엔低 심화, 글로벌 경기침체, 각국의 수입규제 등에 따른 **우리 수출 중소·중견기업의 애로해소에 중점을 두어 대책을 마련**하였다고 밝혔음

○ 한편, 윤 장관은 "엔低 등 대외 불확실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, 수출 중소·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**금번 특별대책을 통해 금년도 수출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"고 보고**하였음

〈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〉 [참고3], [참고4] 참조

□ 정부는 **2013.5.1(수) 오전**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**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**하여, 대외 환경의 악화에 따라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보고하였음

○ 이날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윤상직)는 최근 우리 수출 중소·중견기업 등이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**「수출 중소·중견기업의 지원확대방안」**을 보고하였고,

○ 기획재정부(장관 : 현오석)는 기업들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**「규제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」**을 보고하였음

□ 금번 대책은 최근 세계경기 회복 지연, 엔低 심화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우리 **수출 중소·중견기업 등의 애로해소를 수출의지를 회복**시킬 필요가 있고,

○ 최근 부진한 설비·건설투자로 인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**적어도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의 투자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** 마련하게 되었음

□ 산업부는 금번 개최된 '무역투자진흥회의'가 **2009년 11월 30일 이후 4년만에 부활**되어 **분기별로 개최되는 정례회의**로서,

○ 무역과 외국인투자 뿐만 아니라 국내투자에 관한 대책도 다루어, **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부흥**코자 하는 박근혜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음

□ 이날 산업부가 보고한「수출 중소·중견기업 지원확대방안」과 기재부가 보고한「규제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」의 주요 내용은 각각 <참고 2>와 <참고 3>과 같음

[참고 1]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요
[참고 2] 제1호 안건(수출 중소·중견기업 지원확대방안)
[참고 3]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 보도자료(기재부)
[참고 4] 제2호 안건(규제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)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임형진 서기관(☎ 02-2110-5312),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박재진 서기관(☎ 044-215-451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요

일시 · 장소 '13.5.1.(수) 10:00~11:45, 청와대 영빈관

안 건
① 수출 중소·중견기업 지원확대방안(산업부)
②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(기재부)

참석자 약 150명

○ **(정부)** 부총리, 미래부·외교부·안행부·문화부·농식품부·산업부·복지부·환경부·국토부·해수부 장관, 금융위원장, 공정거래위원장, 기재부1차관·산업부1차관(토론진행), 고용부 차관, 국무조정실 1차장, 관세청장, 중기청장, 특허청장, 중소기업옴부즈만 등 21명

○ **(유관기관)** 코트라 사장,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, 중진공 이사장, 산단공 이사장, 수출입은행장, 국민은행장, 기업은행장, 외환은행장, 무보 사장, 신보 이사장, 기보 이사장, 대외경제연구원장, 새만금·군산 경자구역청장 등 13명

○ **(경제계)** 대한상의 회장, 무역협회장, 중기중앙회장, 전경련 부회장, 경총 부회장, 수출·투자 기업 대표 등 약 39명

○ **(국회)** 안효대 의원, 강길부 의원, 김관영 의원, 주승용 의원 등 4명

회의진행 총 105분

○ 개회(3분) → 모두말씀(10분) → 안건보고(20분, 부총리/산업부장관) → 토론(65분, 진행:산업부1차관/기재부1차관) → 마무리말씀(5분) → 폐회(2분)

○ 토론주제(2개)별로 참석자가 발언하면 소관부처 장관이 답변하여 현장에서 직접 애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(trouble shooting)

별첨 무역투자진흥회의체 개최 연혁

◈ '63년 이후 **범정부적인 회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**함으로써 **수출(무역투자) 진흥방안 모색**

- 초기 수출 시책, 분석 위주에서 점차 업종별 경쟁력강화, 투자 촉진 등 무역투자 확대와 관련된 모든 주제를 논의

1 **수출진흥위원회** ('63~'65년, 총 32회 개최)

* '62.11월 수출진흥위원회 설치(위원장 : 내각수반(국무총리))

2 **수출진흥위원회 청와대확대회의**('66~'70년, 총 56회 개최)

* '65.10월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위원회 청와대확대회의로 확대
* 대통령께서 직접 수출관련 모든 사항을 챙기는 의미에서 청와대로 회의장소 변경

3 **수출진흥확대회의**('71~'76년, 총 63회 개최)

* '71년 명칭 변경(청와대확대회의 → 수출진흥확대회의), 회의장소 변경(청와대 → 중앙청), 참석대상 확대, 회의 종료후 신규수출상품 전시회 병행

4 **무역진흥확대회의**('77~'80년, 총 32회 개최)

* '77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계기로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진흥하는 무역진흥확대회의로 명칭 변경

5 **무역진흥월례회의**('81~'86년, 총 20회 개최)

6 **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**('98~'00년, 총 5회 개최)

* 무역과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로 명칭 변경

7 **무역진흥확대회의**('03~'04년, 총 3회 개최)

8 **무역투자진흥회의**('08~'09년, 총 4회 개최)

참고 2 제1호 안건(수출 중소·중견기업 지원확대방안)

수출 중소·중견기업 지원확대방안

2013. 5. 1.

관계부처합동

목 차

Ⅰ. 한국 무역이 가야할 길 ····· 1

Ⅱ. 최근 수출입 동향 및 당면애로 ····· 4

Ⅲ. 수출 중소·중견기업 애로해소 특별대책 ····· 8

1. 무역금융 대폭 확대 지원(11.1조원 추가) ····· 8

2. 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 지원 ····· 12

3. 글로벌 시장개척 역량 제고 ····· 16

4. 수출 중소기업의 '손톱 밑 가시' 뽑기 ····· 20

Ⅳ. 실천계획(Action Plan) ····· 25

Ⅰ. 한국 무역이 가야할 길

1 한국무역이 극복해야 할 과제

□ 우리나라는 **무역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**하는 데 성공하여 왔으나, **내수 증대,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등에 있어 한계**를 지속 경험

○ **(내수와의 연계 약화)** 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 비중 하락 등으로 수출 증가가 소비·투자 등 내수 진작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

* 중소·중견기업 수출비중(%) : ('09) 36.9 → ('10) 34.5 → ('11) 33.0 → ('12) 33.4

○ **(고용효과 둔화)**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확산, 상대적으로 고용효과가 낮은 산업과 대기업이 수출을 견인하면서 수출과 고용간 괴리 심화

* 수출의 고용유발계수(명/10억원) : ('00) 10.9 → ('05) 8.0 → ('10) 5.9

○ **(부가가치 창출 약화)** 소재부품의 높은 수입의존도로 외화가득률 하락

* 수출의 외화가득률(한국은행) : ('90) 0.671 → ('05) 0.617 → ('10) 0.563

○ **(무역형태변화 대응부족)** 온라인 무역, 정부간 무역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확산에도 불구하고, 관련 법·제도적 지원장치가 미비

□ **최근 글로벌 무역환경**은 우리의 수출확대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아 **수출을 통해 경제부흥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**이 예상

○ **(세계경제 침체 장기화)** 무역의 소득탄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EU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는 수출을 크게 제약

*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(한국은행) : ('50~'85) 1.35 → ('85~'11) 2.21

○ **(자국산업 육성강화)** 양적완화, 수출확대 등 경제부흥 노력 경주

* (美) 국가수출확대정책(NEI) 강화 등 / (日) 무제한 양적완화, 법인세 인하 등

○ **(보호무역주의 확대)** TBT·지재권 강화 등을 통해 자국산업 보호

*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조치 건수(GTA) : ('10) 225 → ('12) 467

2 향후 무역정책 방향

◈ **그간의 양적 성장전략만**으로는 무역이 일자리·부가가치 창출, 내수 연계 등에 기여하는 데 **근본적으로 한계**

◈ 향후 **한국 무역은**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극복을 통한 **무역규모의 지속 확대**와 **일자리·부가가치 등 새로운 가치를 지향**

그간의 무역	'新무역' 정책방향
대기업 중심	**대기업 + 중소·중견기업 동반**
무역 중심	**통상협력·산업·투자와 무역 연계**

1 **중소·중견기업 수출확대** : 수출의 근간인 대기업외에도 **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을 확대**하여 **일자리와 내수를 직접 창출**

* 중소기업 수출↑ → 기업매출·일자리·근로자 소득↑ → 투자·소비 등 내수↑

2 **통상협력·산업·투자와 무역 연계로 새로운 수출기회 창출**

① (통상협력 + 무역) **산업자원·해외건설협력**을 통해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**글로벌 대형 플랜트 등 시장개척**

② (산업 + 무역) **제조업과 지식서비스간 결합**을 통한 **복합무역·중계가공무역 등 고부가가치 무역구조 이행**

③ (투자 + 무역) **국내외 법인간 연계강화**를 통한 해외투자의 수출유발 확대 및 **외국인투자 유치**를 통한 **국내수출기반 확충**

◈ '新무역' 정책방향에 맞춰 **금년 중 세부대책을 수립,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상정·논의**토록 하겠음

(참고) '13년 무역투자 관련 주요정책 수립계획(안)

정책명	주관	협조	시기
1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추진계획	산업부	중기청	6월
2 해외건설·플랜트 금융확충방안	기재부	금융위 산업부 국토부	6월
3 중소기업의 FTA활용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	산업부	관세청 중기청	6월
4 新 통상 로드맵	산업부	외교부 기재부	6월
5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방안	산업부	농식품부 문화부 중기청	7월
6 전문무역상사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수출지원방안	산업부	중기청	7월
7 수산물 수출진흥방안	해수부	기재부 관세청	7월
8 수출단계별 지재권분쟁 지원대책	특허청	산업부 중기청	7월
9 문화콘텐츠 수출확대방안	문화부	기재부 관세청	8월
10 투자와 연계한 수출확대방안	산업부	중기청	9월
11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방안	농식품부	기재부 관세청	10월
12 개도국 산업역량지원 기본계획	산업부	외교부 등	11월

Ⅱ. 최근 수출입 동향 및 당면애로

1 최근 수출입 동향

□ **(1/4분기)**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0.5% 증가한 1,355억달러, 수입은 3.0% 감소한 1,297억달러로 무역수지는 58억달러 흑자 기록

○ 미국 등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, **1/4분기 우리 수출은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**

< 최근 수출입 실적 >

(단위 : 백만달러, % / 통관기준)

구 분	'11년	'12년	'13.1~3월
수출 (증감율)	555,214(19.0)	547,870(△1.3)	135,465(0.5)
수입 (증감율)	524,413(23.3)	519,584(△0.9)	129,684(△3.0)
무역수지	30,801	28,285	5,781

○ (지역별) ASEAN·중국 등 對신흥국 수출은 크게 증가하였으나, EU·일본·미국 등 선진시장으로의 수출은 감소

* 지역별 수출증가율(%) : (ASEAN) 11.5 (中) 7.0 (美) △4.6 (EU) △9.3 (日) △9.5

○ (품목별) IT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증가에 힘입어 무선통신기기·액정디바이스·반도체 등 IT 주력품목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,

- 철강·자동차 등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, **선박은 수출이 급감 (27.3% ↓)**하여 **수출생태계 약화 우려**

* 품목별 수출증가율(%) : (무선통신기기) 23.2 (LCD) 10.2 (석유화학) 8.9 (반도체) 5.0 (석유제품) 4.3 (일반기계) △2.6 (자동차) △3.6 (철강) △10.6 (선박) △27.3

* 선박을 제외한 1/4분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.2% 증가

□ **(향후전망)** 엔低 등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 대해 **적극적인 정책적 대응**을 통해 **금년도 수출목표를 반드시 달성**(4.1% 증가 전망, 1.1일)

2 우리 수출에 대한 엔低 영향

□ **(동향)**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시작된 엔低 현상은 일부 품목 수출 둔화,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 **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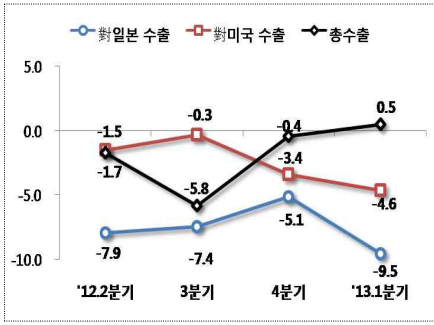
○ **(환율)** 엔/달러 환율은 일본 新정부의 양적완화 조치('아베노믹스') 등으로 달러당 100엔대에 근접하는 등 엔低 심화

* 엔/달러 환율 : ('12.4월) 81.5 → ('13.4.29일) 97.9 ('12.4월 대비 20.1% ↑)
원/100엔 환율 : ('12.4월) 1,393.9 → ('13.4.29일) 1,132.5 ('12.4월 대비 18.8% ↓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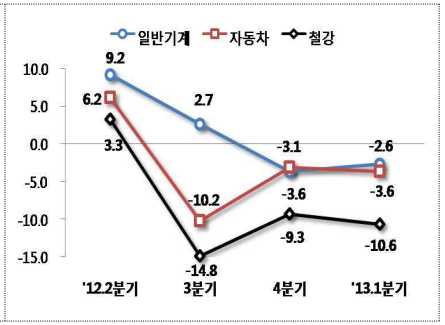
* 주요국 화폐의 달러화 대비 절상률('12.4월 대비, 4.29일 기준)
- (일본) △20.1% (인도네시아) △6.1% (중국) 2.2% (한국) 2.3%

○ **(수출)** 엔低의 영향이 우려된 일본·미국 시장과 자동차·기계·철강 등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품목의 수출이 부진

< 對일본, 對미국 수출증가율(%) >



< 주요 對일본 경합품목 수출증가율(%) >



* (주) : '13년 1분기 수치는 잠정치

□ **(영향)** 우리 수출에 대한 엔低 영향은 **긍정적, 부정적 측면 상존**

○ 對日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등의 수입단가 하락으로 완제품의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은 긍정적 측면

○ 다만 자동차·기계·철강 등 對日 경합품목의 수출경쟁력 약화,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강함

(참고) 엔低의 업종별 영향 분석

구분	부정적 영향	부정적 영향 완화요인
자동차	○ 가격경쟁력 악화 → 수출둔화 * 미국시장 판매 증감률('13.1-3월) : 일본車 4.8%↑, 한국車 3.4%↓ ○ 중소부품업체 채산성 악화 * 환헤지 미비,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우려	○ 일본업체의 해외생산 확대 → 엔低에 따른 수출확대 제한적 * 일본차 수출(만대) : ('08) 673→ ('12) 480, * 해외생산(만대) : ('08) 1,165 → ('12) 1,574
기계류	○ 미국·중국 등에서 일본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 약화 * (美) 식품가공기계, 원동기 등 * (中) 금형, 건설기계 등 ○ 對日 수출업체와 중소기업의 수출가격 하락 → 채산성 악화	○ 일본산 핵심부품류 수입업체의 수입원가 절감 효과 * 기계산업진흥회 조사결과 - 약 50%의 기업이 엔低로 수입비용 감소
철강	○ 對日 수출, 자동차, 조선 등 수요산업을 통한 간접수출에 악영향	○ 철스크랩 등 일본산 원부자재 수입단가 하락 → 생산비용↓ ○ 일본기업의 생산 원가 상승 → 일본제품 가격경쟁력 악화
IT·전자	○ 日 전자부품업체(배터리, 카메라 모듈 등)의 가격 인하 → 수출경쟁력 악화	○ 디스플레이 핵심소재(ITO 필름 등) 및 반도체, LCD 장비의 수입단가 하락
농수산 식품	○ 엔화가치 하락 → 채산성 악화 ○ 가격경쟁력 상실 → 수출중단	○ 장미 등 소수품목에 대한 로얄티 지급부담 일부 경감
서비스 등	○ 일본인 관광객↓, 우리 국민의 일본 등 해외관광 수요↑ → 서비스 수지 악화	○ 엔화 대출 보유기업 → 엔低에 따른 환차익 발생

3 수출 중소 · 중견기업의 당면애로

□ 우리 중소·중견기업은 **최근의 수출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인식**

○ 엔화 약세 등으로 인한 **환율 변동성 심화**, 경기침체와 수입규제 등으로 인한 **해외진출 애로**가 높은 비중 차지

* '13.2분기 수출기업 애로요인 비중(%, 무역협회 '13.3월)
- (환율변동성 확대) 29.5 (경기침체·경쟁격화) 28.4 (수입규제 강화 등) 5

○ 국내외 간담회 등에서도 설문조사와 유사한 애로 파악

* 국내 10개 지역별 간담회, 유관기관 조사 및 해외 9개 지역 설문 실시('13.3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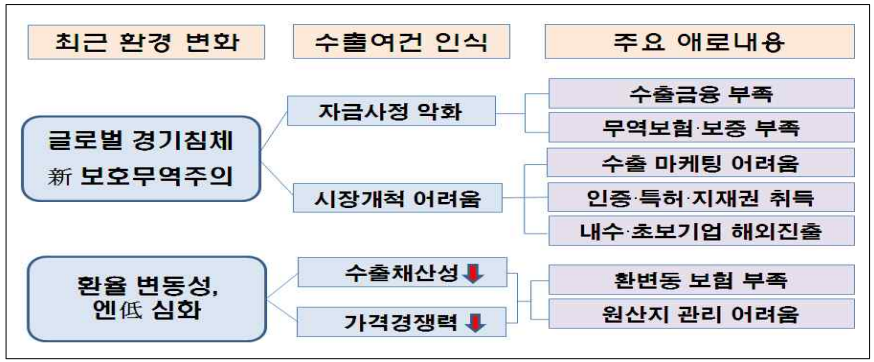
- **(국내요인)** 마케팅, 무역금융 등 기초 수출지원 요구

* (대전권) 특허·인증 지원, 무역금융 지원, (강원권) 의료기기 인증비용, 전시회 참가 부대비용 과다, (대구권) 환변동 보험 확대, 내수·수출초보기업 지원확대 등

- **(해외요인)** FTA활용과 인증·지재권 등 비관세장벽 대응 수요

* (中·日) 지적재산권 침해 대응지원, (CIS·아프리카) 언어장벽, 신규바이어 신용평가방법 개선, (美·EU) FTA활용, 인증, 환율 대응 등

【 수출기업의 여건과 주요애로 】



□ **최근 수출 중소·중견기업은 채산성 악화와 수출경쟁력 약화로 매우 어려운 상황**에 직면하고 있어 **특단의 애로해소대책 필요**

Ⅲ. 수출 중소·중견기업 애로해소 특별대책

1 무역금융 대폭 확대 지원 (11.1조원 추가)

◈ 정책금융기관들의 무역금융 확대지원 계획에도 불구하고, **실제 수출 중소·중견기업들의 금융조달 애로는 상존**

* 당초 정책금융 지원규모(조원) : ('12) 62.6 → ('13) 71 (한은 총액한도대출 1.5, 수은 대출·보증 등 25, 무보 무역보험 35, 신기보 신용보증 9.5)

○ **(중소·중견기업)** 확실한 수출계약을 보유하고도 신용도가 낮아 **금융기관이 대출 기피** → 수출이행을 위한 **제작자금 조달 애로**

* (사례) 휴대용 소화기 제조업체가 16만불 수출계약 체결(60% L/C, 40% 선수금) 후 생산자금 부족에 따라 계약서를 근거로 지원 요청 → 신용부족 이유로 거절

- 특히, 최근 엔/달러 환율이 100엔대에 가까워지는 등 엔저가 심화되면서 수출중소기업의 환리스크 증가 및 채산성 악화

○ **(중소형 플랜트)** 수주액 대비 **낮은 지원한도 책정 → 수주포기**

- 중소형 해외건설·플랜트 수주시 금융기관 대출·보증이 필요하나, 기존 실적 중심의 심사로 지원한도가 낮게 책정되어 수주확대에 애로

* (사례) A업체는 해외정부가 발주한 발전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(500억원) 했으나, 수주실적이 적다는 이유로 지원한도를 낮게 책정받아 수주 참여 포기

○ **(조선기자재) 해운경기 침체, 대금지급조건 악화 → 자금난 심화**

- '07년이후 선주금융의 주축이던 유럽계 금융기관들은 해운경기 침체, 재정위기 등으로 선주금융에 대한 금융지원 여력 위축

* 해외 선주들은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인해 대금지급방식을 Heavy tail (대금지급 : 10-10-10-10-60%)로 전환→ 조선사의 제작자금 수요증가

【 무역금융 주요대책 】

◈ 엔低 대응 및 수출 중소·중견기업, 중소형 해외건설·플랜트 등 자금수요가 높고 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**특별지원(당초 71 → 81.1조원)**

○ **(재원)** 추경(1,500억원), 시중은행 특별출연*(3,000억원) 등 **4,500억원**

* 시중은행 특별출연규모(억원) : (기업은행) 1,000, (외환은행) 1,000, (KB) 1,000

○ **(지원)** 엔低 대응(1.3조원) 및 수출 중소·중견기업(6.3조원), 중소형 해외건설·플랜트(1조원), 조선기자재 등 선박금융(2.5조원) 등 **총 11.1조원**

지원대상	당초계획(조원)		추가(조원)	재원충당(억원)
① 수출 중소·중견기업 (엔低 대응)	수은	25	0.5	추경예산 500(자본금)
	정금공	0.2	0.1	기존예산 활용
	신보	7.2	-	기존예산 활용
	무보	35 (1.2)	5 (1.3)	추경예산 500(출연금) (추경예산 60)
			2	시중은행 1,200(특별출연)
② 중소형 해외건설·플랜트 수주	무보	0.6	1	시중은행 600(특별출연)
③ 조선기자재 등 선박금융	수은	15.5	0.5	추경예산 500(자본금)
	무보	5	2	시중은행 1,200(특별출연)

* (추경 운영배수) 수은 10, 무보 100, (시중은행 특별출연 운영배수) 17배내외

* 외환·국민·기업은행은 1~2년에 걸쳐 무역보험기금에 특별출연
(예) 외환은행 : ('13) 500억원 출연→ 향후 지원 소진속도를 보아가며 추가 출연 → 동 은행과 거래하는 수출기업에 대해 무역보험 특별 지원

1 수출 중소·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 (7.6조원)

□ **(수은)** 수출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**대출 및 보증 확대 (0.5조원)**

* 수출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상생협력 대출상품 등을 통해 지원

□ **(무보)** 환변동보험, 단기수출보험, 신용보증 등 **무역보험 확대(7.0조원)**

○ 수출 중소·중견기업의 수요증가에 맞춰 **환변동보험 인수확대(1.3조원)**

* 무보의 환변동보험 이용실적(4.10일 기준) : 9,327억원(전년동기대비 235%↑)

【애로해소사례】 농식품 수출중소기업 대상의 옵션형 환변동보험 신설('13.4월) ⇒ 보다 **적극적인 환위험 헷지 지원**

* 환율상승시 환수금 면제 + 높은 보험료분담(aT 90%, 농식품업체 10%)

○ 결재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커버하는 **단기 수출보험 지원 확대(3.7조원)**

○ 내수기업, 수출초보기업, 유망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후보군을 대상으로 **맞춤형 무역보험 지원(2조원)**

* (내수 → 초보) 기업당 5천만원 지원, 보증료 20% 할인 등 수출창업희망보증
* (초보 → 유망) KOTRA(지사화사업)와 무보(중소기업 단체보험)의 상품 연계
* (유망 → 강소) 금융·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무역보험프로그램 신설

□ **(정금공)** 시중은행을 통해 저리로 대출하는 **특별온렌딩 지원규모 확대(0.1조원 : 당초 2,000 → 3,000억원)**

□ **(신보) 수출희망기업**에 대한 **수출준비자금 보증[1]**, **수출개시기업**에 대한 **자금보증[2] 신설 등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전환** 지원 확대

1) 매출액 한도에 상관없이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
2) 매출액 한도에 상관없이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

2 중소형 해외건설·플랜트 수주를 위한 무역보험 지원(1조원)

□ 해외건설협회 등에서 사업성 평가가 우수하게 심사된 경우에는 **수출보증보험 지원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** 지원

* 심사기준 : (기존) 자기자본+매출액 위주 → (개선) 공사 수행능력+수익률 위주

□ 국내 중소형 플랜트기업에 대한 **해외 발주처의 발주를 전제**로 **무보가 중장기 수출보험을 先제공***하여 수주기회 확대

* 중장기수출보험(구매자신용) 지원(억불) : ('12) 5.0→ ('13) 10.0 (100%↑)

□ **일시적 자금유동성 지원**을 위해 **개별 프로젝트 계약서를 근거**로 **수출이행용 제작자금 지원**

* 업체당 최대 30억원, 건당 최대 10억원

□ 우량 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해 **사업타당성조사 초기부터 무역보험공사가 참여**하여 **사업성평가와 무역금융 연계**

3 조선기자재 제작금융 및 보증 확대(2.5조원)

□ **(수은)** 국내 조선사에 대한 **제작금융 지원 확대(0.5조원)**

□ **(무보) 조선기자재 제작자금 등**을 위한 **특별 무역보험 지원 (2조원)**

○ **(구매금융) 해외에서 발주하는 선박에 대한 국내 조선사의 수주 확대**를 위해 **자산담보부채권보증 상품 신설**(1조원)

* 수출기반보험 지원대상 확대 : 국적 외항선사 → 국적 외항선사 + 원양업체

○ **(건조금융)** 선박수주 건에 대한 수출계약 취소 방지, 선박건조 및 수출이행 등을 위해 **선수금환급보증 발급과 제작자금 지원**(1조원)

2 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 지원

◈ 중소기업이 旣체결된 **FTA의 관세인하 효과를 최대한 향유**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**FTA 원산지 관리가 필수**

○ 정부는 중소기업 원산지 관리 지원을 위해 무료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으나, **중소기업들은 원산지 관리에 애로**

* 원산지관리 애로요인('12.11월, 무역협회) : 복잡한 서류관리(55.9%), 전문인력 부족(34.3%), 품목분류의 어려움(33.7%) 등

* 중소기업은 원산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**FTA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**
- 한미 FTA 발효 1년 수출활용률(%, '13.3.14) : (대기업) 76.9 (중소기업) 60.7

◈ **FTA원산지 관리는** 일반원산지와 달리 **복잡하고 까다로우며**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**간접수출기업도 확인서를 발급** 필요

○ FTA원산지 증명서는 **기초자료 작성, 발급절차, 판정기준 등이 까다롭고 사후검증도 엄격**

- 회사내에서도 구매, 생산, 영업 부서 등 회사내 **주요데이터를 모두 취합, 기초자료로 관리** 필요

* (일반원산지증명서) 첨부서류 없이 신청시 당일 발급(대한상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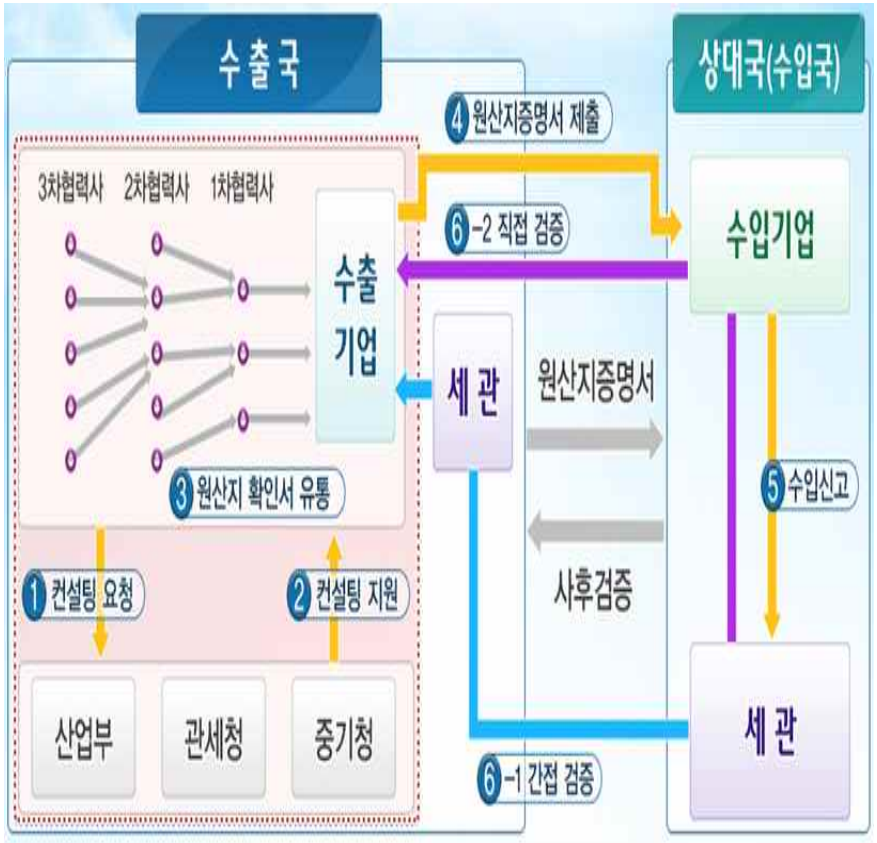
* (FTA원산지증명서) 자재명세서, 제조공정설명서, 원가증명서 등 최소 8종에서 최대 13종의 자료입력이 필요, 소요시간도 3일 소요

○ 또한, 수출기업 또는 1차 벤더는 부품 또는 원자재 공급업체로부터 FTA원산지 판정을 거친 **원산지 확인서를 수취·관리 의무**

* 2·3차 협력사는 확인서 발급 부담이 크고 혜택이 없어 확인서 발급에 소극적

◈ **FTA 원산지 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** 등의 FTA 활용 제고를 위해서는 **초기단계에서 전문인력을 통해 직접 지원** 필요

(참고) FTA 원산지 증명서(확인서) 유통과정



1 FTA 원산지 관리 단계별 애로해소

□ **(현장맞춤형 컨설팅)**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**업종별·규모별 맞춤형 컨설팅** 확대 ('12년 2,329건 → '13년 3,000건 이상)

○ 기업이 **원산지 관리를 최종 수출단계에서 지속**할 수 있도록 **신청기업을 찾아가서 전과정 지원**

*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와 16개 지역센터의 관세사, 원산지관리사 등 보강
- 컨설팅 전문인력 : ('13) 24 → ('14 목표) 70 → ('15 목표) 140명

○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**세관**[1] **및 대한상의**[2]**의 원산지 지원 강화**

1) FTA원스탑지원센터를 통한 원산지 관리 전과정에 대한 기업컨설팅
2) 원산지 상담 및 발급인력 보강 및 원산지 실무자 교육 등 확대

□ **(인센티브 강화)** 직접 수출자가 아닌 **2·3차 협력사는** FTA특혜관세 혜택은 없는 반면, **확인서 발급·유지 부담이 큼을 감안**하여 **인센티브*** 보강

* 현재는 원산지확인서 발급시 건당 1만원, 연간 30만원까지 부가세 세액공제

□ **(사후검증 대응지원)** 발급절차가 상대적으로 쉬운 **자율발급 기업의 사후검증 대비 강화**를 위한 **선제적·사후적 검증대응체계 구축**

* (선제적) 매뉴얼 보급(시행중), 온라인 콘텐츠 및 자가검증툴 제공(상반기)
* (사후적) 신고창구개설('13.5월), 증빙서류 작성지원(FTA무역종합지원센터)

2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 확충

□ **(원산지시스템 보급)** FTA KOREA(KTNET), FTA-PASS(관세청) 등 **무료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지속 확대** ('13.3월말 9,568개사 → '15년 2만개사)

□ **(업종별 시스템 구축)**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**주요 업종별**로 **특화된 시스템 개발·보급**('13년 수요조사·기획, '14.상 개발·보급)

* (현행) 섬유 분야만 특화서비스 제공 → (개선) 기계, 전기·전자 등 추가

□ **(시스템간 연계)** 중소기업 자원관리시스템(ERP)과 **연계를 위한 표준 모듈 개발**(3개), **ERP와 원산지관리시스템 연계 지원**('13년 10억원)

□ **(증명서류 유통기반) 원산지 증명서류의 전자적 유통*** **촉진**을 위해 **표준전자문서 제정 및 유통망 구축**

* 전자문서 표준이 UN(KTNET), WCO(관세청)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바, 상호간 호환을 위한 표준전자문서를 제정하고 연계모듈 개발·보급 추진

□ **(원산지애로 피드백 강화)** FTA 원산지 관련 애로를 분석·평가하여 **기체결 협정*** **개정과 신규 협상시 반영** 추진

* (예 : 한-아세안FTA) 원산지 증명서상에 가격기재 의무 부여로 활용률 저하, 세율 HS코드와 원산지 HS코드가 상이하여 혼란 초래 등

3 원산지 관리 전문인력 확보 지원

□ **(실무인력 재교육) 재직자 대상** 원산지 관리 교육 확대와 **e러닝 시스템 구축** 및 **업종별 실무메뉴얼 제작·보급**

* 재직자 교육 : ('12) 25,257명 → ('13) 30,000명

* '원산지 관리' 등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 지원, 중소기업 근로자 자율훈련 지원 등 실무인력 능력향상 지원

□ **(인력채용 지원)** 중소기업이 전문인력 고용시 **인센티브*** 제공

* '관세사', '원산지관리사' 등 채용시 고용창출지원금 지급 ('13년 1,500명 1인당 1년간 1,080만원)

□ **(전문인력 양성)** 지역기업에 필요한 원산지 관리 전문인력 교육

○ 대학생, 퇴직인력 등 대상 **FTA 전문인력 교육 확대**

* FTA비즈니스 석사과정(7개 신설), FTA 원산지 실무과정(매년 70명), 무역 퇴직인력 전문컨설턴트 육성(80 → 120명), 원산지 관리사 시험 확대(연 2→ 3회) 등

○ **고용연계형 교육프로그램***을 확대하여 **전문인력** 공급 및 **일자리 창출**

* 인천시, 세관, 상의, 수출경영자 협의회 등이 협력하여 지역대학생 대상 교육, 지역기업 취업과 연계('12년 40명→'13년 100명) → 전국으로 확산

3 글로벌 시장개척 역량 제고

◈ 전체 중소기업(312만) 중 **수출기업은 8.6만여개(2.8%)에 불과**

○ 수출기업 중 **수출초보기업**(수출 100만달러 이하)이 **7.1만개(83%)**, 이중 수출 5만달러 이하 기업이 3.6만개(50%)로서 **매우 영세**

◈ 내수·수출초보기업은 수출을 할 수 있는 **글로벌 역량이 취약**

○ 수출을 도와줄 수 있는 **민간 무역서비스업체가 영세**

○ 정부간 무역(G2G) 등 새로운 영역 도전에 대한 지원기반이 취약

○ TBT·특허분쟁 등 각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 미약

1 내수·수출초보기업 집중 지원

□ **(전문무역상사 활성화)** 내수·수출초보기업의 **수출 대행과 FTA 활용 지원**을 위한 **전문무역상사 활성화**

○ **업종별 협동조합** 활성화, **대·중소기업 공동출자 수출전문기업*** 등 **다양한 형태의 전문무역상사 설립** 지원

* 남동발전은 16개 핵심 협력업체와 해외 수출전문 특수목적법인(G-Tops)을 설립하고(지분 남동 29%, 협력 71%), G-Tops가 협력업체의 수출마케팅을 전담

○ 수출 중소기업의 전문무역상사 활용에 대한 **인센티브 보강**

* 선적전 수출물품 구매자금 지원, 무역보험료 추가할인 등

○ **해외한인경제인단체***와 연계한 중소기업의 **글로벌 네트워크 구축**

* 세계한인무역협회(OKTA, 123개 지회),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(INKE, 78개 지부) 등

○ 내수·수출초보기업의 FTA **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 지원**

○ **전문무역상사 지정·육성 제도 도입**(대외무역법 개정, '13.12월)

□ **(맞춤형 지원인프라 강화) 기초 수출역량** 확보 및 **1:1 밀착지원**

○ 農工단지 등 기초지자체 소재 내수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거래선 발굴, 계약서 검토 등 **수출애로를 즉시 해결(이동 KOTRA*)**

* 이동 KOTRA 서비스 제공기업목표 : ('13) 800개 → ('14) 1,000개

○ 기술, 디자인 등 **기초수출역량 강화**[1]와 **'수출 맛보기**[2]**' 프로그램 확대**

1)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확대(억원) : 417 → 517(추경 100억원)

2) 바이어 발굴·매칭, 계약실무 지원 등을 통해 내수기업에게 최초 수출경험 제공
- 수출 스타트업(Start-Up)사업(무역협회) : '13년 300개 신규
 수출 첫걸음사업(KOTRA) : ('12) 207 → ('13) 500 → ('14) 2,000개 목표

2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 강화

□ 무역사절단, 해외전시회, 지사화사업* 등 **시장개척 활동 지원 확대**

* 현지직원/수혜기업 : ('12) 237명 2,079개 → ('13) 259명 2,200개 → ('14목표) 450명 3,200개

□ **모바일·SNS* 등**을 통한 수출업체정보 제공과 바이어상담 지원, **수출정보 종합안내 및 컨설팅 지원기능** 강화(KOTRA)

* LinkedIn(비즈니스 SNS) 개별계정 지원(KOTRA·무협) : ('12) 160 → ('13) 420개사

□ **글로벌 온라인쇼핑몰**(아마존 등 B2C)**내 한국관 개설*** 입점('13.5월) 및 중소·중견기업 상품의 **글로벌 B2B 사이트**(알리바바 등) **등록**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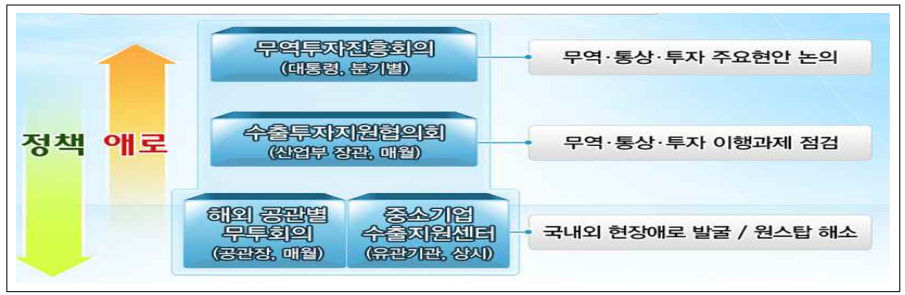
* 독일 아마존 한국관 진입품목 확대 : ('12) 112 → ('13) 1,500개

□ 해외 대형매장내 **중기제품 전용매장(K-HIT)** 설치, **중소기업 제품 상설전시장** 구축을 위한 업계 수요조사 및 구축계획 수립('13.8월)

□ **글로벌 강소기업 후보군** 대상 진출전략 수립, R&D·금융·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**'글로벌 하이웨이 프로그램'** 도입(추경 100억원)

3 현장중심 수출 애로해소 지원 시스템 운영

□ 중소기업 현장 수출애로와 정책이 환류되는 **수출지원체계 구축**



○ **(해외) 재외공관**의 **무역·통상 기능**을 강화하여 현지 진출기업·수출유관기관을 망라한 **"공관별 무역투자진흥회의"**(공관장, 분기별) 개최

- 공관 지원을 위한 **KBP***(Korea Business Plaza) **확대**('13년 6개 → '17년 30개)

* KOTRA, 무보, 수은, 무협 등 수출지원기관이 같은 건물에 입주하여 중소기업 지원

○ **(국내)** 수출역량별 맞춤 서비스 지원을 위해 **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**를 **중심**으로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**원스탑 수출지원 체계** 구축

- 센터(11개 지역, 중기청) 內에 KOTRA, 중진공 등 **공공기관 지원단을 설치하여 해외마케팅·인력·자금 등 협업 방식으로 지원**

□ **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수출지원 전문기관**으로 **KOTRA 재편**

○ 중소기업의 **수출 성장단계별로 사업·조직 재편('13.7월), 지역전문가 양성, 수출직결형 정보제공 강화** 등 서비스 질 제고

○ 수출기업에게 해외 무역관의 사무공간, 통신 인프라 **전면 개방**

* 열린무역관 : ('12년) 47개 → ('13년) 70개 → ('14년) 전체 무역관

□ **수출지원기관 CEO 정례 협의체** 및 **협력프로그램 개발** 강화

* 수출초보기업 대상 무보-유관기관(KOTRA, aT 등)간 단체보험계약 체결

4 정부간 무역(G2G) 지원기반 구축 및 新보호주의 대응

□ **(G2G무역)** 대외무역법령 개정을 통해 **KOTRA의 G2G 계약지원 범위 확대**(현행 : 방산 → 방산 + 非방산물자)와 **계약이행시스템 강화**

* 非방산물자 거래수요('13년) : P국 5,500만불, C국 15,000만불

○ **'KOTRA 해외 프로젝트 수주협의회*'** 및 **전담 무역관(79개) 운영** 등 프로젝트 **발굴부터 수주까지 전 과정**을 효율적으로 지원

* 국내기업 521개사 1,537명의 회원 보유(월 1회 정기포럼 개최)

□ **(TBT대응)** 수출 중소·중견기업의 **무역 기술장벽 극복** 지원

○ 중소기업 **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** 지원 확대('13.4월, 추경 100억원)

*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: ('12) 107억원(1,800개사) → ('13) 207억원(3,000개사)

○ 주요국별 시험·인증 **정보제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**('14.4월)

○ 중복 시험 인증 해소를 위해 국가별 **차별화된 상호인정협정(MRA) 추진**과 **정부간 협의채널**(WTO, FTA TBT위원회)을 통한 대응 강화

□ **(특허분쟁)** 특허분쟁 지원 강화와 지재권 안전망 구축

○ 중소기업의 지재권 **소송보험 지원 확대**[1] 및 수출대기업의 납품업체에 대한 **지재권 보증 지원 유도**[2]

1) ('12) 4.2억원, 29개사 → ('13) 7.8억원, 55개사
2)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펀드 조성 또는 투자재원 출연 활성화

○ **해외지식재산센터**(IP-DESK) **증설*** 및 **국·내외 지재권 지원센터간**(지재권분쟁대응센터, 지역지식재산센터, IP-DESK 등) **연계 강화**

* ('12) 8개소(LA 신설) → ('13.상) 9개소(미국 1개소 추가)

○ **수출시장 진출단계**(수출준비-현지진출-수출정착)**별 분쟁지원**

※ 향후 새로운 FTA 협상시 TBT와 지재권을 중요의제로 논의

4 수출 중소기업의 '손톱 밑 가시' 뽑기

1 조선기자재업계의 안정적 일감 확보 지원

◈ **(애로내용)** '08년 하반기 이후 세계 조선·해운경기 불황으로 **조선산업 및 관련 기자재산업 위기 지속**

* 선박수출 추이(억불) : ('08) 431 → ('10) 491 → ('11) 566 → ('12) 397

○ 이에 따라 **중소 조선업체 및 기자재업체의 생존기반 붕괴 우려**

→ **조선기자재업계는** 향후 1~2년 이후 **세계 조선시황 회복에 대비**하여 **수출기반이 유지**되도록 **일감확보 등 지원 요청**

◈ **(관계부처)** 기재부·산업부·해수부·지자체(공동)

【조치계획】

① 공공기관 소요 선박의 **조기발주를 통해 일감 지원**('13.12월)

○ 低선가 시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**공공안전·공공복지 관련 선박에 대해 조기발주 추진 검토**

* 노후선 개체수요 : 병원선, 순찰선, 소방지휘정, 행정선, 어업지도선 등

○ 가스공사의 LNG수송선박(7척) 등 공기업 선박도 관련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**최대한 조기발주 유도**

* 한전 발전5사는 석탄 운반선 9척(4,500억원) 조기발주 완료

② LNG선·드릴쉽 등 특수선, 고연비·대용량 컨테이너선 등 그린쉽, 해양플랜트 등 **고부가 선박으로 구조 고도화** 추진('13.5월)

○ 해양플랜트 등 **고부가 선종에 대한 중소기자재업체 경쟁력** 제고

* 해양플랜트 R&D 로드맵 수립·전략품목 도출('13.4월), 그린특수선(LNG추진선, 해양플랜트지원선 등) 산업생태계 조성방안 수립('13.5월) 등

* 조선기자재 국산화율 : (일반상선) 90%, (해양플랜트) 20~30%

2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른 영문주소 안내서비스 강화

◈ **(애로내용)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른 주소표기 변경**으로 우리 기업 해외 수출 시 상이한 주소로 혼란을 경험

* '14년 제도 전면시행을 앞두고 정부기관 발급서류는 도로명주소만 표기

- 해외에서 **旣발급받은 영문서류 등과 신주소가 상이**하여 해외 바이어, 행정기관으로부터 증명요청 등이 지속
-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영문사이트의 서비스가 부족하고, 영문 명칭 변경증명서 발급이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여 활용에 한계

→ 무역협회는 **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 영문사이트 활성화**와 **도로명주소 영문명칭 변경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** 건의

◈ **(관계부처)** 안행부(주관), 산업부(협조)

【조치계획】

①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(www.juso.go.kr) 서비스 강화

○ 도로명주소 영문 안내홈페이지에서 기존주소(지번)와 도로명주소가 영문으로 동시 표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('13.8월)

② 도로명주소 변경 영문증명서 온라인 발급

○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(www.juso.go.kr)상에서 업체가 직접 신청·발급 받을 수 있도록 발급절차 개선('13.8월)

* 업체에서 증명에 필요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동일주소 확인후 즉시 발급하여, 기업의 이용편의성 제고와 증명서 발급기간 단축(7일→2일)

3 온라인 B2C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

◈ **(애로내용)** B2B 중심의 무역에서 온라인 B2C 거래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위해 **소규모 온라인 수출에 대한 지원방안** 마련 필요

→ 소규모 높은 빈도의 거래 특성을 감안하여 수출 신고시 **현행 건별 수출 신고를 일괄 수출 신고로 전환**하고,

중소 수출사업자를 위한 외국어 카탈로그, 상담 지원 등 **B2C에 특화된 지원제도 마련** 요청('13.4월, 외투기업 간담회 ; e-Bay사)

◈ **(관계부처)** 관세청·중기청(주관), 산업부(협조)

【조치계획】

① B2C 거래의 수출 신고방식 변경(건별 → 일괄) : 부분 반영(관세청)

○ 건별 수출신고는 국가무역통계 작성, 통관적법성 심사 등을 위한 것으로서 **일괄 수출신고로 전환시 정보 파악* 곤란** 야기

* 거래구분·목적국·금액·환급여부 등 관세행정 목적

⇒ **현행 건별 신고방식을 유지**하되, **업계 편의증진**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중요도가 낮은 **수출신고서 기재항목 축소('13.6월)**

② B2C 수출지원 확대 : 지원 프로그램 즉시 확대(중기청)

○ 온라인 수출지원 사업(중진공)을 통한 상품페이지 제작지원*,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을 통한 전자 카탈로그 제작지원**

* (영문 상품 페이지) ('12) 1,208 → ('13) 1,300개사, (중국어·베트남어·인니어 등 현지어) 200 → 800개사, (수요자 요구 언어 제작) 427 → 800개사

○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e-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전반적인 마케팅 교육 예정

4 전자무역 이용 관련 무역업계 애로해소

◈ **(애로내용 ①)** 관세청은 무역업체의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**KTNET을 통한 화물통관정보 제공을 중단**[*]('13.3.4)하고, 직접 제공 방식은 유지

* 중단사유 : '96년부터 KTNET을 통해 무역업체 등 8,970개사에 동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, 정보보호 강화의 필요성과 시급성으로 직접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

→ 그러나, 그 동안 KTNET을 통해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해 오던 기업들은 **현행대로 정보 제공이 지속되기를 희망**하는 한편, **영업비밀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**을 요청

◈ **(애로내용 ②) 시스템 이원화[*]에 따른 이중접속** 등으로 불편 초래

* '12.4월부터 관세청에 대한 적하목록제출 시스템이 KTNET과 KCNET으로 이원화

→ **전자무역시스템(무역, 통관, 물류)간 상호 연계** 등으로 더 편리하게 전자무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

◈ **(관계부처)** 관세청・산업부・국토부・해수부(공통)

【조치계획】

① **화물통관정보 제공 재개 ('13.5월)**

* 이용 수요가 가장 많은 '화물통관진행정보'는 조기 재개('13.4.22)

② **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정보 제공 ('13.6월)**

○ 무역업체의 수요를 파악하여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기업이 원하는 형태로 가능한 최대한의 정보 제공

※ 중장기적으로 무역정보의 활용촉진방안 검토(정부 3.0 부처협업과제)

③ 수요자 이용관점에서 **전자무역 시스템간 상호 연계 추진 ('13.12월)**

5 전략물자 품목에서 단순 네트워크 장비 제외

◈ **(애로내용)** 전략물자의 판정기준이 불명확[*]하고, 제품명이 다르면 동일제품 수출시에도 동일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등 문제 발생

* 무선라우터, 스위치 등 단순장비 등도 전략물자 판정 대상에 포함

→ 네트워크 장비 수출기업은 **단순장비의 전략물자 범위 제외**와 **전략물자 허가절차 간소화**를 요청

◈ **(관계부처)** 산업부(주관), 관세청(협조)

【조치계획】 관련 국내 고시 및 국제판정기준 개정 추진 중

① **수출허가 면제 확대 및 허가절차 간소화**('13.5월)

○ 네트워크 장비 등 암호화 장비에 대한 허가면제 요건[*]을 완화하여 통상적인 수출 시에는 허가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**고시 개정**

* 현재는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에서 특정용도(내부개발 또는 생산용도)로 사용할 경우에만 허가를 면제

○ 일정 수준의 내부 통제시스템을 갖춘 기업도 전략물자 자율준수 무역거래자[*]로 지정하여 반복적인 허가절차를 생략

*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이 구축된 기업에 대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가 지정하여 포괄허가, 서류면제, 기간단축 등 특례 부여

② **단순 네트워크 장비 관련 전략물자 국제판정기준 명확화 추진**

○ 국내외 네트워크 장비의 기술수준과 해외 주요국의 수출통제 현황을 비교・검토하여 **무선라우터 등 단순장비에 대한 국제판정기준 개정**

* 개정절차 : 국제수출통제체제(수출통제 대상품목을 결정하는 다자간 협의체) 안건 상정→ 회원국 간 논의→ 개정안 통과→ 국내 고시 개정

Ⅳ. 실천계획(Action Plan)

◈ **수출투자지원협의회**(산업부 주관)를 통해 추진상황 지속 **점검·관리**

○ 안건 내용을 과제화하여 과제의 구체적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

○ 점검과정에서 과제확대, 부처 간 추가협의 등이 필요한 사항은 무역투자진흥회의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

◈ **기업애로 발굴체계**(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, 재외공관별 무투회의)**를 상시 가동**하여 **이행과제 성과평가**와 신규 **제도개선과제 발굴**

1. 무역금융 대폭 확대 지원

실천 과제	시한	담당부처
▪ 수출입은행 수출 중소·중견기업 대출 및 보증 확대	'13.5월	기재부
▪ 환변동보험, 단기수출보험, 신용보증 등 무역보험 확대	'13.5월	산업부
▪ 정금공 특별 온렌딩 지원 확대	'13.5월	금융위
▪ 수출입은행 국내 조선사 제작금융 지원 확대	'13.5월	기재부
▪ 중소형 건설·플랜트 수주를 위한 특별 무역보험 지원	'13.7월	산업부/국토부
▪ 조선기자재 제작 등을 위한 특별 무역보험 지원	'13.7월	산업부

2. 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 지원

실천 과제	시한	담당부처
▪ 사후검증 선제적·사후적 대응체계 구축	'13.6월	산업부/관세청
▪ 원산지 증명서 표준전자문서 제정 및 유통망 구축	'13.10월	관세청/산업부
▪ ERP 연계형 표준모듈개발, ERP와 FTA-PASS 연계시스템 지원	'13.11월	관세청/중기청
▪ 협력사 원산지 확인서 발급 인센티브 확대	'13.12월	기재부/산업부
▪ 무료 원산지 관리 시스템 보급	연중계속	산업부/관세청
▪ 지역 중소기업 업종별·규모별 맞춤형 컨설팅 확대	연중계속	산업부 중기청/관세청
▪ 원산지 관리 전문인력 지원	연중계속	산업부 고용부/관세청
▪ 업종별 특화된 원산지관리 시스템 개발·보급	'14.상	산업부 관세청/중기청

3. 글로벌 시장개척 역량 제고

실천 과제	시한	담당부처
▪ 국내 원스탑 수출지원 시스템 구축	'13.5월	산업부/중기청
▪ 전문무역상사 지원방안 마련	'13.7월	산업부
▪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단계별로 KOTRA 사업・조직 재편	'13.7월	산업부
▪ 해외 현지 중기제품 상설전시장 수요조사 및 구축계획 수립	'13.7월	산업부/중기청
▪ 특허분쟁 지원강화와 지재권 안전망 구축	'13.8월	산업부/특허청
▪ 내수·초보기업, FTA수출유망기업 맞춤형 지원	'13.10월	산업부/중기청

실천 과제	시한	담당부처
▪ 공관별 무역·투자진흥회의 개최	분기별	산업부/외교부
▪ 시험·인증 정보제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	'14.4월	산업부/중기청
▪ 전문무역상사 지정·육성 제도도입 (대외무역법 개정)	'13.12월	산업부
▪ 정부간 무역(G2G) 지원기반 구축 (대외무역법 개정)	'14.상	산업부

4. 수출 중소기업의 '손톱 밑 가시' 뽑기

실천 과제	시한	담당부처
▪ 공공기관 소요선박 조기발주 추진 검토	'13.12월	산업부 해수부 등
▪ 그린특수선 산업생태계 조성방안 수립	'13.5월	산업부/기재부
▪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	'13.5월	산업부/관세청
▪ 온라인 B2C 수출지원 프로그램 확대	'13.5월	중기청/산업부
▪ 관세법령 허용 범위 내에서 무역정보 최대한 제공	'13.6월	관세청/산업부 국토부/해수부
▪ B2C거래 수출신고서 기재항목 축소	'13.7월	관세청/산업부
▪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사이트 서비스 강화	'13.8월	안행부
▪ 도로명주소 영문명칭 변경증명서 온라인 발급제도 실시	'13.8월	안행부
▪ 공기업 도입선박 조기발주 유도	'13.12월	산업부/기재부
▪ 수요자 이용관점에서 전자무역 시스템 간 상호연계	'13.12월	관세청/산업부 국토부/해수부
▪ 네트워크 장비 관련 전략물자 국제판정기준 명확화 추진	'14.상	산업부/관세청

참고 3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 보도자료

경제부흥, 국민행복, 문화융성, 평화통일 기반 구축

보도자료

희망의 새시대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

보도일시	2013. 5. 1(수) 10:00		
배포일시	2013. 4.30(화) 11:00	담당부서	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
담당과장	나 석 권 (044-215-4510)	담 당 자	박재진 서기관(044-215-4511)

제목: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

□ **현오석 부총리**는 **5.1(수)** 대통령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하여 **"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"을 보고**하였음

○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주재로 미래·산업·환경·국토부 등 **관계부처 장관, 금융위·공정위 위원장** 및 **유관기관, 경제계, 국회의원** 등 **약 150명이 참석**한 가운데,

- **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방안**(기재부)과 **수출 중소·중견기업 지원확대 방안**(산업부)이 논의되었음

□ **현부총리**는 설비투자는 4분기 연속, 건설투자는 3년 연속 감소세*를 보이는 등 **기업 투자 부진세가 지속**되고 있다면서,

* 다만, '13.1/4분기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0.7% 증가

○ **투자부진 지속**으로 **경기회복이 지연**되고 **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**가 있기 때문에,

- **적어도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의 투자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** 마련하게 되었다고 강조함

□ **현부총리**는 3월부터 민관합동 「투자 활성화 T/F」를 통해 관계부처·경제계·지자체로부터 수렴한 **250여건의 건의과제 중**

○ **「투자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과제」**를 위주로 **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**하였다고 밝혔음

□ **"규제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" 주요 골자**는 다음과 같이 **크게 3가지**임

① **(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)** 각종 규제,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, 지역 여론 등으로 **현장에서 대기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가 가동**되도록 **적극 지원**함

○ 이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는 **총 6건**으로 **그중 5건이 산업단지 등 주로 지방에서 투자가 대기**되어 있는 상태임

○ **동 프로젝트들이 당초 계획대로 성사**될 경우 **총 투자효과는 약 12조원 이상**으로 추정됨

주요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방안

	지원 방안	투자효과	소재지
프로젝트 1	· 가용 용지가 소진된 산단에 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공공기관이 보유한 산단내 부지를 활용토록 지원 · 현재 공공기관이 운영중인 시설은 지하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	8조원	지방
프로젝트 2	· 현행법은 산단내에서는 부지와 공장을 분리하여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, 외투법인의 경우 부지만 임대하여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제한적 허용 · 다만, 예외 인정시에도 내·외국법인 차별문제 등을 감안하여 부지 처분제한 등 보완장치 마련	1조원	지방
프로젝트 3	·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지분율을 현행 100%에서 50%로 완화하되, 외국인 합작법인의 규제완화를 우선 추진	2조원	지방
프로젝트 4	· 산업단지내에서도 열병합발전소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 · 열병합발전소 사용연료도 청정연료(LNG)로 한정하지 않되,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최상 가용기술(BAT)을 적용하여 청정환경 확보	1조원	지방
프로젝트 5	·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의료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(가칭: 메디텔)도 호텔업의 새로운 하나*로 인정하여 건립 근거 마련 * 현 호텔업: ① 관광호텔업, ② 수상관광호텔업, ③ 한국전통호텔업, ④ 가족호텔업, ⑤ 호스텔업 * 현재는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도 "관광호텔"로 설립 허가를 신청하여 지역 주민의 부정적 인식 존재	-	서울
프로젝트 6	· 육상풍력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명확한 육상 입지규제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 · 다만, 육상풍력 구축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된 14개 단지는 가이드라인 제정 이전에라도 입지 가능여부를 조속히 결정	-	지방

② **(규제·행정절차 개선)** 기업투자의 **주요 애로요인으로 건의된 입지규제 및 업종별 진입규제를 신속히 개선**함

(1) **입지규제**

○ **(토지이용 인허가)** 다단계에 걸친 현행 **토지이용 인·허가 절차를 통일**하고, **협의기간을 명시**

○ **(개발제한구역)** 공장증축시 **부담금을 50% 감면**하고, 공장증축 **승인절차 이행기간 단축**(최대 2년→6개월)

○ **(산업단지 및 경자구역) 사업시행자 요건 완화**

○ **(계획관리 지역)** 성장관리방안*을 수립한 **계획관리 지역의 건폐율(40%→50%), 용적률(100%→125%)을 완화**

*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(낮은 건폐율·용적률)으로 이용·개발이 허용되는 지역

(2) **업종별 규제**

○ **(ICT·방송)** 미·EU 투자자의 **기간통신사업자 간접투자**를 현행 **발행주식 총수의 49%에서 100%로 확대**하는 한편, **전송망 사업자 등록을 "원칙허용"**으로 전환

○ **(의료·관광)** 의료-ICT융합서비스를 위한 **의료정보 인프라를 구축**하고, 관광단지내 **"휴양형 주거시설"을 도입** (가용면적의 5%이내)

○ **(제조업) 재제조 품질인증** 품목을 타업종으로 **지속 확대**하고, **자동차 튜닝 부품**의 인증대상 항목도 **확대**

○ **(농업) 농식품전문펀드 지원**을 강화하고 농업경영 시설물에 **전력판매 목적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** 허용

○ **(해양·항만) 항만·배후단지 개발 활성화**를 위해 사업시행자를 연기금·금융회사 등으로 확대하고, **민간투자도 확대**

③ **(금융·재정 등 중소기업 지원)** 자금여건이 어려운 **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·재정 등 투자 인센티브**를 제공함

○ **(설비투자) 설비투자펀드 규모 확대**(3조원→5조원), **중기 설비교체 지원**(1,000억원),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 **설비투자 비중 확대**(10%→13%) 등

○ **(창업 및 가업승계)** 신설 중소기업 **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**(5년→7년), **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**, **상생협력** 투자재원 출연 **세제지원**(7% 세액공제) 지속

○ **(지식활용 및 에너지투자) 기술융합 특례보증 도입, 지식재산 특별온렌딩·특별보증제도** 신설, **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지속**

□ **현부총리**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**앞으로도 지속 추진**될 것임을 강조함

○ 관계부처·경제계·지자체·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**「투자 활성화 TF(팀장: 기재부 1차관)」**를 연중 가동하여

- 경제단체, 지자체 등으로부터 **추가 건의를 지속 접수하여 현장 대기 중인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**하고,

- **성과관리를 강화**하여 **각 과제를 카드화하여 관리**하고, **현장 점검 및 평가,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** 등을 통해 **추진실적을 지속 관리**하겠다고 함

○ 향후, **자유로운 창업과 기업 투자를 견인**할 수 있도록 경제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되,

- 범정부 차원의 **'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기본계획***'을 마련하고, **현행 규제에 대한 전수 조사·분석**, 경제계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**네거티브 전환대상 과제를 발굴**하고,

* 5.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

- 또한, **시장친화적 규제로의 전환, 규제절차·기준의 투명화**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함

□ **현부총리**는 이를 바탕으로 **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**하고, **분야별 추가 대책을 마련**해 나가겠다고 밝힘
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
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※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

◇ 투자활성화 대책 **세부내용**에 대한 **문의사항**이 있는 경우,
아래의 **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 당 부 서	담 당 과 장	담 당 자
기재부 정책조정총괄과	나석권 (044-215-4510)	박재진 서기관 (044-215-4511) 김현수 사무관 (044-215-4513)
산업부 산업정책과	정대진 (02-2110-5111)	김준겸 사무관 (044-2110-5346)
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	이동민 (044-201-3674)	김성수 사무관 (044-201-3677)
환경부 환경산업정책과	강석우 (044-201-6701)	양명식 사무관 (044-201-6702)
미래부 기획재정담당관	권현준 (02-2110-2204	차용호 사무관 (02-2110-2223)
문화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	김현환 (02-3704-9221)	강지은 사무관 (02-3704-9212)
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	홍정기 (02-2023-7670)	하태길 사무관 (02-2023-7661)
해수부 기획재정담당관	엄기두 (044-200-5120)	김규섭 사무관 (044-200-5131)
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	노수현 (044-201-2111)	김형식 사무관 (044-201-2119)
안행부 지역경제과	최병관 (02-2100-2967)	김종철 사무관 (02-2100-2971)
금융위 금융정책과	이세훈 (02-2156-9710)	한송희 사무관 (02-2156-9714)
공정위 경쟁정책과	김윤수 (044-200-4300)	김혜선 사무관 (044-200-4305)
중기청 정책총괄과	변태섭 (042-481-4537)	김민지 사무관 (042-481-3955)

규제개선 중심의
투자 활성화 대책

2013. 5. 1.
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Ⅰ. 추진 배경 ····· 1

Ⅱ. 투자 활성화 대책 추진 전략 ····· 2

Ⅲ. 1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 ····· 4

1. 건의과제 분석

2. 1단계 중점 추진과제 내용

(1) 현장 대기중인 기업 프로젝트 가동 지원 ····· 5

(2) 잠재되어 있는 기업의 투자 유인 ····· 9

① 입지규제 개선

② 업종별 진입규제

③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·재정지원

Ⅳ. 향후 투자 활성화 추진 방향 ····· 1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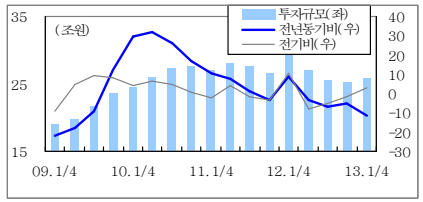
Ⅴ.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 ····· 19

Ⅰ. 추진 배경

□ 최근 기업의 투자는 **부진세를 지속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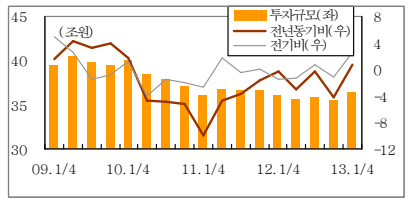
○ **설비투자**는 '12.2/4분기 이후 **4분기 연속 감소세**이며, **건설투자**는 '10~'12년간 **3년 연속 감소세** 시현

설비투자



* 자료: 한국은행

건설투자



* 자료: 한국은행

□ **투자부진**은 **경기적 요인, 심리적 요인, 제도적 요인**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

○ **저성장세 지속**에 따라 기업 투자에 비우호적 여건이 조성

- 중소기업의 경우 저금리에도 **자금사정은 오히려 악화**

○ 위기국면이 반복되면서 **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**

○ **입지·환경** 등 투자와 밀접한 분야에서 **불합리한 규제도 상존**

□ 투자부진 지속시 **경기회복 지연 및 성장잠재력 훼손** 우려

* 제조업생산능력증감율(전기비): (08)5.2 (09)3.4 (10)7.9 (11)4.9 (12)2.2

* 자본노후화율(사용연수/내용연수, 한은): (00~07)37.4% → (08~11)38.5%

⇨ 적어도 **불합리한 규제**로 인해 **기업의 투자에 지장이 초래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 마련** 필요

* 민간기업 투자를 측면 지원할 대책을 관련부처가 조속히 마련해 추진 (대통령 지시사항, 13.4월)

Ⅱ. 투자 활성화 대책 추진 전략

□ **(추진 방향)** 경제계, 지자체, 각부처 등으로부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건의 받아 **양방향**(Two Track)으로 대안 모색

○ **(Track 1)** 규제,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으로 **현장에서 대기중인 기업 프로젝트가 가동될 수 있도록 애로 해소**

○ **(Track 2) 잠재되어 있는 기업 투자를 유인**할 수 있도록 **규제·행정절차 개선** 및 **금융·재정 등 인센티브 부여** 방안 강구

- 특히, 규제개선은 **입지·환경·금융 등 유형별 규제**를 **원칙허용·예외금지(Negative System)로 전환**하는데 중점

□ **(추진체계) 관계부처·경제계·지자체·민간전문가** 등이 함께 참여하는 **「투자 활성화 T/F**(팀장: 기재부 1차관)」를 연중 가동

○ **협업**을 통한 현장애로 상시 발굴을 위해 **대한상의에 경제단체·전문가·관계공무원** 등으로 **투자 활성화 시스템을 구축·운영**

○ **지자체와의 협력 활성화**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**「시도경제협의회***」에서 지역애로 발굴 및 해결 방안 강구

* 기재부 1차관, 17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으로 구성

□ **(성과관리) 실제 투자**로 연결되도록 지속적으로 **점검·평가·관리**

○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제개정 등 **우선 조치가 가능한 과제부터 추진**하되, **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최대한 조기** 처리

○ 각 과제를 **카드화**하여 관리하고, **현장 점검 및 평가,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** 등을 통해 **추진실적 관리**



Ⅲ. 1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

1. 건의과제 분석

□ 금년 3월부터 **「민관합동 투자 활성화 T/F」**를 통해 **관계부처·경제계·지자체**로부터 **250여건의 건의과제**를 수렴

○ 이중 **투자관련 제도개선** 관련건의는 **117건**이며, **진입규제·입지·환경·인력 순**으로 빈도가 높음

○ **투자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과제는 약50여개**로 분류

투자 활성화 건의과제 분류 결과

구 분		투자관련			투자무관	계
		단기과제	중장기과제	소 계		
제도개선	입 지	13	35	48	5	53
	환 경	4	2	6	1	7
	인 력	-	4	4	10	14
	진 입	13	43	56	23	79
	기 타	1	2	3	-	3
	소 계	31	86	117	39	156
금융·재정		19	45	64	30	94
계		50	131	181	69	250

□ 이번 **1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**에서는 **「투자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과제」**를 위주로 추진방안을 마련

① 우선 **현장에 대기중인 기업 프로젝트**의 가동에 주력

② 입지·환경 등 **분야별 규제 및 업종별 규제**도 신속히 개선

③ 아울러 **중소기업** 투자 유인을 위한 **금융·재정 인센티브 마련**

□ 한편, **투자효과는 크지만 규제 개선에 상당시일**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* 등에 대하여는 "네거티브 체계" 전환 등 보다 **체계적이고 구조적인 해결**방안 강구(2단계 대책부터 본격 추진)

* 주로 국토계획, 도시, 환경, 고용, 안전, 위생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 과제

○ **재정지원** 등에 대한 건의는 **예산편성·세제개편시 별도** 검토

2. 1단계 중점 추진과제 내용

Track 1 현장 대기중인 기업 프로젝트 가동 지원

◇ **규제, 지자체 인허가 지연, 지역 여론**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**대규모 기업 프로젝트를 가동**하는데 중점

○ **제도개선, 창의적 대안** 등을 통해 **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실제 투자로 연결**되도록 관리

⇒ **직·간접 총 투자효과는 약 12조원 이상으로** 추정

(1) (입지애로 해소) 공장증설 부지 확보 지원

□ **(현황)** 지방소재 **국가 산업단지내에 공장을 증설**하고자 하나, 동 산단내 **용지가 소진**되어 투자에 애로

□ **(추진방안)** 산단내 여유 부지가 없는 상황이므로 **공공기관이 보유중인 산단내 부지를 일부 활용**하는 방안을 검토·협의(5월)

* 총 180만m^2 면적 부지로 저장시설 등을 설치·운영 중

○ 현재 **공공기관이 운영중인 시설은 지하화**하여 **관리비용을 절감**하고, **지상 부지를 기업이 활용**할 수 있도록 추진

□ **(기대효과)** 1단계 **약 3조원, 2단계 약 5조원** 투자효과('16년까지)

(2) (산단 규제 개선) 산업단지내 토지임대차 제한 개선

□ **(현황)** 지방소재 **산업단지내 부지를 분양받은 기업**이 동 부지를 **외국회사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임대**하여 공장 설립 추진시

○ **현행 법령**은 산업용지 부지와 공장을 **동시에 임대**하도록 하여 **부지만 분리하여 임대하는 것을 금지***

*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38조의 2

- 이는 일부기업이 **산단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대규모로 소유하는 것을 방지**하기 위한 취지

○ 이에 따라 **외국인투자 지역**임에도 불구하고 **외국인 투자를 유치**(공동출자법인)하여 **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**

□ **(추진방안)** 외국인투자법인은 **외국인투자지역***내에서는 **산단 부지만 분리하여 임대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**
(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마련, 5월)

* 신기술 도입, 고용창출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지정·고시

○ 다만, **예외 인정**시에도 내·외국법인 차별문제 등을 감안하여 **부지 처분제한*** **등의 보완 장치**를 마련

* (예시)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내 해당 산업용지 처분 제한

□ **(기대효과)** 공장 설립시 **약 1조원**의 투자효과('14년까지)

(3) (지배구조 규제 개선) 지주회사 규제 개선

□ **(현황)** 현행 **공정거래법**은 **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지분율을 100%로 제한**

○ **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기술개발 촉진** 등을 위해 **외국회사와 공동출자**하여 **증손회사를 설립**하려 해도 **원칙적으로 불가**한 상황

- 이는 기업의 **무분별한 확장을 제한**하여 **기업의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**하게 하자는 취지

□ **(추진방안) 공동출자법인**에 한해 손자회사의 **증손회사 최소 보유지분율을** 100%에서 **50%로 완화**하되, **외국인 합작법인**의 규제완화를 우선 추진*

*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개정안을 마련(5월)하고, 추후 국내기업간 합작법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「공정거래법」 개정도 추진

□ **(기대효과) 약 2조원의 외국인 투자 유치** 효과 기대

(4) (입지·환경 규제 개선) 산업단지내 열병합 발전소 건설

□ **(현황)** 일부 산업단지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**산업단지내 고효율 열병합 발전소 건립**을 추진 중

○ 그러나, 법령상 **산업단지내에는 발전소 입주가 금지**되어 있고, 마스터플랜상 **발전소 사용연료로 청정연료(LNG)이외의 연료 사용이 가능한지 불명확**

- LNG 연료만 허용될 경우 **경제성 부족**으로 발전소 건립 곤란

□ **(추진방안)** 산업단지내에도 **열병합발전소의 입주가 가능**하도록 **법령을 정비**(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 개정, 6월)하고,

○ 열병합발전소에 **LNG 이외의 연료(예: 유연탄)도 허용**하되,

-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**최상 가용기술**(Best Available Techonology)을 적용하여 **청정환경 확보**

□ **(기대효과)** 발전소 건립에 **약 1조원 및 간접투자 효과(+α)** 기대

(5) (관광규제 개선) 의료관광객 숙박시설 건립

□ **(현황)** 병원에서 **외국인환자 유치 확대**를 위해 **의료관광객**(환자 및 환자보호자 포함)**용 숙박시설 건립**을 추진하고자 해도,

○ 현행 법령상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의 분류가 없어* **"관광호텔"로 관련 지자체에 설립 허가를 요청**해야 함

*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호텔업은 ① 관광호텔업, ② 수상관광호텔업, ③ 한국전통호텔업, ④ 가족호텔업, ⑤ 호스텔업으로 분류

○ 해당 지자체는 **관광호텔에 대한 부정적 인식**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반발 등을 고려하여 **관광호텔 부지로의 변경을 불승인**

□ **(추진방안) 의료관광객 숙박시설(가칭: 메디텔)**을 관광진흥법령상 **호텔업의 종류로 인정**하여 **건립 근거를 마련**(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, 6월)

□ **(기대효과) 의료관광 활성화 및 관광수지 개선**에 기여

(6) (입지·환경규제) 풍력발전 입지 규제 개선

□ **(현황)**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**육상 입지규제 개선 가이드라인***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으나,

* 친환경 풍력발전 입지에 대한 환경성 평가 기준

○ **연구용역 결과**, 업계 등의 보완의견을 고려한 **조정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**되어 **가이드라인 제정이 지연**

- 그 결과, 육상풍력단지 구축사업이 **상당부분 진행된 14개 단지 사업 추진여부가 불분명**하게 되어 중소생산업체가 애로 호소

□ **(추진방안)** 진행중인 **14개 단지는 가이드라인 제정이전에 입지 가능 여부를 조속히 결정**(5월)

○ **관계부처가 협업**하여 명확한 **가이드라인*** 마련('13년말)

* 풍력자원 1등급지(산업부)와 생태·자연도 1등급지(환경부) 중첩지역 중 풍력단지 구축이 가능한 지역을 명확화

□ **(기대효과)** 14개단지 건설시 **2,125억원** 투자효과, **8,925명 고용**창출효과 기대

Track 2 잠재되어 있는 기업의 투자 유인

◇ 기업투자 애로요인으로 건의된 분야별 **규제·행정절차를 신속히 개선**하고, 자금여건이 어려운 **중소기업**에는 **금융·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**

(1) 입지규제 개선

1 토지 및 인허가 행정절차

○ **(토지이용 통합 인허가)** 다단계에 걸친 현행 **토지이용 관련 인·허가 절차를 통일***하고 **협의기간을 명시**(입법안 마련, 12월)

* 현재는 각종 영향평가와 농지·산지 전용 협의 등 수많은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함

- 서류 접수부터 협의 조정까지 **협의 절차를 일괄 운영**하고, **통합 가능 절차는 일괄 심의하거나 동시 시행**

○ **(지자체 허가전담부서 확대)** 기업 **민원의 신속한 처리**를 위해 도시 규모 등을 고려한 **인·허가 전담부서*** **설치 확대**
(인허가 전담부서 관련 지침 시달, 7월)

* 현재 김포, 포천 등은 건축·환경·농지 등 관련업무를 1개 부서로 일원화하였고, 서초구 OK 민원센터의 경우 인허가부서 실무자 1명씩을 민원실에 배치

2 개발제한구역 개발

○ **(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)**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 입안시 **시·도 경유절차 및 국토부 사전협의 절차를 폐지**하고,

- 해당 시·군 관계부서 협의 및 시·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바로 국토부에 승인 신청토록 간소화(개발제한구역해제지침 개정, 12월)

*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평균 28개월(해제 14개월, 개발계획승인 14개월) 이상 소요

○ **(개발제한구역내 공장증축 규제완화)** 개발제한구역내 공장 증축시 **부담금 50% 감면** 및 **공장증축 승인절차 이행기간 단축**(최대 2년→6개월) (개발제한구역법 및 시행령 개정, 12월)

3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

○ **(지식산업센터* 설립 지원)** 산업단지내 **지식산업센터 설립 활성화**를 위해 전문가인 **신탁업자**에 의한 개발 분양을 허용

* 동일 건물에 제조업, 지식산업·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물(구 아파트형 공장)

- **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**에 **신탁업을 추가**하고 이에 의한 개발·분양이 가능하도록 개선(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 개정, 5월)

* 판례는 산업용지 및 공장의 '신탁'을 '처분'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산집법상 산업용지 또는 공장은 설립완료 신고로부터 '5년간' 처분이 제한되어 신탁 곤란

○ **(산단개발 시행자 요건 완화) 중소기업중앙회** 및 **산하 협동조합***에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자격 부여(산업입지법령 개정, 9월)

* 중기중앙회(조합)는 파주적성 15만평 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구상·추진 중이나,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자격이 없어 사업추진 애로

○ **(경자구역 사업시행자 요건 완화) 일정 규모 이상 시공능력***을 갖춘 경우 사업시행자 요건(현재는 신용등급 BBB+이상 충족 필요)을 부여(경자법 시행령 개정, 8월)

*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이 경자구역 개발계획 연평균 사업비(보상비 제외) 이상

***** 황해경자구역(충남지역 2개 지구) 등은 최근 자격요건 완화에도 불구 과다한 보상비 부담 때문에 사업자 발굴이 어려워 추가 자격요건 완화 건의

4 계획관리지역 및 비도시지역 등

○ **(계획관리지역* 규제 완화) 성장관리방안****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**에 대해서는 **건폐율·용적률 완화**(국토계획법 개정, 6월)

*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(낮은 건폐율·용적률)으로 이용·개발이 허용되는 지역

**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미리 기반시설, 건축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개별적인 개발행위를 관리하는 방안

- 지자체 조례로 **건폐율 40% → 50%, 용적률 100% → 125%** 까지 완화 허용

○ **(비도시지역 지구단위 규제 완화) 획일적으로 규정된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지역 실정에 맞게 기준 완화** (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개정, 6월)

- 지역실정 등에 따라 안전, 환경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층수제한 및 건축물 이격거리 제한 완화

○ **(유수지내 행위제한 완화)** 유수지 내 **허용시설 확대**를 위해 설치불가 시설을 필요최소한으로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(도시계획시설규칙, 9월)

* 현재 유수지에는 원칙적으로 건축이 허용되지 않으며 체육시설, 도서관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

(2) 업종별 진입규제

1 ICT·방송 분야

○ **(외국인 통신 투자 확대)**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**미국·EU 투자자의 간접투자를 공익성 심사 통과를 전제로 현행 발행주식 총수의 49%에서 100%까지로 확대**(방송법 시행령 개정, 9월)

* 다만,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(유선), SKT(무선)는 적용대상에서 제외

** 한미, 한EU FTA 협정문: 공익성심사 통과를 전제로 간접투자를 100%까지 허용

○ **(전송망 사업자 등록 "원칙허용" 전환)** 예외적 금지사항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**누구나 전송망 사업자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** 규정 개정(방송법 개정, '13하반기)

○ **(클라우드 컴퓨팅)** 전산설비 구비의무 완화, 서비스신뢰도 확보 등을 위한 **법적 근거** 마련(가칭 클라우드법 제정, 12월)

* 클라우드 컴퓨팅: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 자원을 인터넷에 접속해서 빌려 쓰고,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

-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시 **개별 법령에 따른 전산설비를 구비한 것으로 인정** 추진

2 의료·관광 분야

○ **(신의료-융합서비스 기반 구축)** 원격진료, 헬스케어 등 **의료-ICT융합서비스**를 위한 **제도 정비** 및 **의료정보 인프라 구축**

-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**국가 보건의료정보 표준을 개발·보급**하고, **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**에 관한 법률* 제정('13년 국회제출)

* 정보보호는 강화하되, u-Health 등 정보 활용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

○ **(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) 관광단지내 "휴양형 주거시설"의 도입**이 가능하도록 허용(관광진흥법 개정, 9월)

* 현재는 공원, 정자 등 휴양과 교육, 문화와 관련된 시설이 가능

- **난개발 및 관광단지의 투기 방지**를 위해 **총 지정면적 100만㎡ 이상**의 **관광단지**는 주거시설 도입을 **가용면적*의 5%이내로 제한**

* 가용면적은 도로, 공원 등 공공·보전용지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면적

3 제조업 및 농림어업 분야

○ **(품질인증 재제조 시장)** 신뢰성과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품질인증 품목을 자동차부품 위주에서 **타업종으로 지속 확대***

* ('12) 10개 자동차 부품 → ('13) 토너카트리지 등 50개 → ('15) 100개 이상(全업종)

○ **(자동차 튜닝시장)** 튜닝에 사용되는 **자동차 부품의 신뢰성 확보**를 위해 **인증대상 항목 확대**(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, 12월)

* '12년 5개(브레이크호스, 등화장치, 좌석안전띠, 후부반사기, 후부안전판) → '15년까지 단계적으로 30~40개 확대(브레이크 라이닝, 후사경, 타이어 등)

○ **(농식품전문펀드 지원강화)** 농식품전문펀드를 결성하여 창업·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도 창투사의 **의무투자실적*으로 인정**(6월)

* 등록후 3년이내에 납입자본금의 40% 이상을 창업자, 벤처기업에 투자

- **농식품전문펀드**의 **투자**를 유치한 **기업**이 **벤처기업 확인**을 신청할 경우 **우대**방안 마련

○ **(태양광발전시설 확충)** 농업진흥구역내 농업경영 시설물에 **전력판매 목적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**될 수 있도록 허용(농지법 시행령 개정, 11월)

* 현재 농업진흥구역내 **자체사용 전력공급**을 목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가능하나, **판매용 전력공급** 목적인 경우는 제한

○ **(갯벌 양식어업 허용)** 현재 자연산 수산물 포획·채취만 가능한 갯벌어장에 갯벌참굴, 해삼 등의 **부가가치가 높은 신품종을 양식**할 수 있도록 허용(양식산업발전법 제정안 마련, 9월)

4 해양·항만 분야

○ **(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) 사업시행자***를 **연기금, 금융회사, 공제회 등이 참여한 출자법인**을 포함하도록 확대(항만법 개정, 9월)

* 현재는 건설업자, 부동산투자회사, 사업구역의 50%이상 토지소유자 등

- 입주기업 실적평가 간소화 등 **항만배후단지 관리제도 개선*** 및 **글로벌항만마케팅센터 설치·운영**(6월)

*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(해수부 고시) 개정

○ **(항만재개발 민간 투자)** 재개발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**민간투자자 범위를 확대**(항만법 개정, 12월)

* 민간이 자유롭게 재개발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되,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만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

○ **(마리나 서비스업*)** 마리나 서비스업 도입을 위한 **마리나법 개정**(7월)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**교육센터 운영**(12월)

* 마리나선박 임대업, 매매업, 정비·관리업, 보관·계류업, 교육·연수업, 운항대행업 등

(3)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·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

1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

○ **(설비투자펀드 확대)** 중소·중견기업 설비투자자금 지원을 위한 설비투자펀드 규모를 3조원*에서 **5조원으로 확대**(기은, 산은)

*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아, '12.8~'14.12간 3조원 중 '13.2월현재 2.2조원 지원

○ **(중기 설비교체 지원)** 중고설비 **교체 투자 활성화**를 위해 **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융자 프로그램 활용 추가지원**(1,000억원)

- 중고기계 매매업체에 대해 **중고설비 매입 자금**을 **융자지원**(중진공)하고, **대상업체 추천** 및 마케팅 등 **매각지원**(기계산업진흥회 등)

○ **(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선)** **수도권 기업이 지방이전시 지원**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 **입지보조금 비중을 축소**(35%→30%)하고 **설비투자에 대한 비중 확대**(10%→13%)(산업부고시 개정, 6월)

* U턴기업 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설비투자 보조비율 최대 5% 추가지원

2 중소기업 창업 및 가업승계 지원 등

○ **(신설 중기 세제지원) 중소기업**에 한해 신설법인의 **투자세액 공제 이월공제기간**을 현행 **5년**에서 **7년**으로 연장(조특법개정)

○ **(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)** 지나치게 **엄격한 현행 가업상속 공제 요건***을 **합리적으로 완화**하는 방안 마련(상속·증여세법 시행령 개정)

* (예시) 현행 요건 : 상속인 1인 전부 상속할 것, 주된 업종 유지 등

○ **(상생협력 투자재원 출연* 지원)** 상생협력 투자재원 출연금에 대한 **세제지원(7% 세액공제)을 지속**

* 출연금은 협력 중소기업의 연구개발, 인력개발, 생산성 향상 및 해외 진출 등을 위해 지원

3 중소기업 지식활용 및 에너지 투자 확대

○ **(기술융합 지원)** 제조업 등 **전통산업 영위 중소기업**이 ICT 등 **신기술 활용*시**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**특례보증지원 프로그램**(신보, 신기술 융합 Smart 보증) **도입**(10월)

* (예)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 및 생산공정 개선 기업

○ **(지식재산 금융지원)**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우대 조건을 제공하는 **지식재산 특별온렌딩* 및 특례보증제도** 신설**(10월)

* 최대 30bp의 우대금리 적용(정책금융공사)

** 일반 기술보증 대비 보증료(최대 30bp), 보증한도(최대 50억) 등 우대(신·기보)

○ **(에너지 절약시설 세제지원)** **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**하되, 기업규모에 따라 **차등 지원*** 추진

* 현재는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일괄 10% 세액 공제

Ⅳ. 향후 투자 활성화 추진 방향

□ 경제단체, 지자체 등으로부터 **추가 건의를 지속 접수**하여 현장 대기 중인 **프로젝트를 추가 발굴 → 애로요인 해소**

○ 연구용역 등을 통해 행정기관의 **각종 인·허가에 대한 합리적 이의 및 조정 절차를 제도화**하는 방안 검토

□ 이와 함께 **자유로운 창업과 기업 투자를 견인**할 수 있도록 **경제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**

○ **(네거티브 규제 체제 전환)** "원칙금지·예외허용" 규제를 **"원칙허용·예외금지" 체제로 전환**

- **범정부 차원의 '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기본계획'**을 마련 (국무조정실, 5.10일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)

· 업종, 자격 및 투자제한, 신기술 인증, 제도미비 및 역차별 등 창업, 투자분야 규제개선에 중점

- **현행 규제에 대한 전수 조사·분석**, 경제계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**전환대상 과제 발굴**

· **진입, 입지, 영업규제** 등 규제유형별 **작업반** 설치·운영

- **실현가능한 분야부터 신속하게 추진**하여 **성과 도출**

○ **(시장친화적 규제로 전환)** 허용·불허용 등 **획일적**인 규제를 부담금, 보험 등 **가격 원리에 의해 규제 목적이 달성**되도록 정비

○ **(규제절차·기준의 투명화)** 규제의 기준이 되는 각종 측정 검사시 **환경·장비·변수·오차 등을 공개**하고 **명확히 기준** 제시

- 환경오염 **측정방식, 측정결과** 등에 대한 **이의 신청을 활성화**하는 방안 검토

□ 이를 바탕으로 **분기별로 추진 실적을 점검**하고, **분야별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**할 예정

※ (예시) 토지 이용 규제 네거티브(Negative) 전환 방안

1. 규제 현황

○ **국토계획법**에서 용도지역별로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제한하고 있으며, **산지관리법, 농지법 등**에 따른 입지규제가 함께 적용됨

*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역을 크게 도시(주거, 상업, 공업, 녹지), 관리(계획, 생산, 보전), 농림,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

○ **대부분**의 법률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입지규제 사항을 허용가능한 시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**Positive 방식**을 적용

2. 문제점

○ **관리지역과 녹지지역**(도시지역)에 **개발수요가 집중***되고 있으나, **경직된 제도운영**으로 개발수요 충족에 한계

* 시가화지역은 국토의 4%에 불과함에 따라 지가가 저렴하고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개발수요 집중(국토의 37%)

- 법령에 명시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 수요도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**신속한 법령 개정이 어려워** 입지 곤란

- **용도지역을 변경**하는 방안도 있으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**장기간 소요되고 특혜시비** 등으로 지자체가 꺼리는 실정

<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현황>



⇨ 개발수요가 높은 **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입지규제를 중점 개선**함으로써 다양한 기능의 입지를 허용하고 투자 활성화 도모

3. 개선방안

① **(관리지역) 규제방식을 전환하여(Positive → Negative)**, 허용대상을 확대하고 규모·높이 등 건축규제도 완화

* 반면, 도시지역(주거·상업·공업) 및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난개발 방지와 양호한 환경 보전 등을 위해 행위제한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

※ (예시) 계획관리지역 허용 건축물 대상 확대

(현행) 허용 건축물		(개선안) 금지 건축물
단독주택, 근린생활시설, 의료시설, 창고, 공장(화학제품제조시설 제외), 교육연구시설, 발전시설, 장례식장, 동식물관련시설, 방송 통신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교정 및 국방·군사시설 등	⇒	화학제품제조시설 등 유해물질 배출시설, 판매시설, 업무시설, 위락시설 등

* 건축물 유형은 건축법에 따라 총 28개로 구분

② **(자연녹지지역) 지구단위계획을 수립**하는 등 계획적 개발에 대해서는 **입지규제를 완화**하고, 건폐율 등 건축기준도 완화

※ (예시 1) 자연녹지지역에는 판매시설 입지가 제한적이나,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개발할 경우 판매시설 입지 허용 확대

※ (예시 2)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건폐율(20%)을 50% 범위내에서 상향조정 허용

③ **(부처협업을 통한 입지규제 동시 개선) 자연환경보전법**(환경부)**, 산지법**(산림청)**, 농지법**(농림부) 등 중첩되는 입지 규제도 **연계**하여 **개선**

* 관리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외에 여타 관련법률에 따른 입지규제도 동시에 개선되어야 실효성 확보 가능

4. 향후 계획

○ 국토부·환경부·농림부·산림청은 물론 지자체·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지이용개선 T/F를 구성하여 **입지규제 개선방안 마련**('13.7)

○ **국토계획법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**('13년말)

Ⅴ.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

추진 과제	소관부처	추진일정
1. 현장 대기중인 기업 프로젝트 가동 지원		
1-1. 공장증설 부지확보 지원	산업부	'13.5월
1-2. 산업단지내 토지 임대차 제한 개선	산업부	'13.6월
1-3. 지주회사 규제 개선	산업부 공정위	'13.6월
1-4. 산업단지내 열병합 발전소 건설	산업부	'13.6월
1-5. 의료관광객 숙박시설 건립	문화부	'13.6월
1-6. 풍력발전 입지규제 개선	산업부 환경부	'13.12월
2. 잠재되어 있는 기업 투자 유인		
2-1. 입지규제 개선		
2-1-1. 토지 및 인허가 행정절차		
2-1-1-1. 토지이용 통합 인허가 절차 개선	국토부	'13.12월
2-1-1-2. 지자체 허가전담부서 설치 확대	안행부	'13.7월
2-1-2. 개발제한구역 개발		
2-1-2-1.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	국토부	'13.8월
2-1-2-2. 개발제한구역내 공장증축 규제완화	국토부	'13.12월
2-1-3.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		
2-1-3-1. 산업단지 內 지식산업센터 설립규제 완화	산업부	'13.5월
2-1-3-2. 산단개발 사업 시행자 요건 추가 완화	국토부	'13.9월
2-1-3-3. 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 요건 추가 완화	산업부	'13.8월
2-1-4. 계획관리지역 및 비도시지역 등		
2-1-4-1. 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·용적률 완화	국토부	'13.6월
2-1-4-2.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완화	국토부	'13.6월
2-1-4-3. 유수지 내 행위제한 완화	국토부	'13.9월

추진 과제	소관부처	추진일정
2-2. 업종별 진입규제		
2-2-1. ICT · 방송 분야		
2-2-1-1.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간접투자 제한 완화	미래부	‘13.9월
2-2-1-2. 전송망 사업자의 등록 원칙허용 전환	미래부	‘13.7월
2-2-1-3.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활성화	미래부	‘13.12월
2-2-2. 의료 · 관광 분야		
2-2-2-1. 신의료 · 융합서비스 발전을 위한 제도 및 정보화 기반조성	복지부	‘13.10월
2-2-2-2. 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	문체부	‘13.9월
2-2-3. 제조업 및 농림어업 분야		
2-2-4-1. 품질인증 재제조 제품 확대	산업부	‘13.6월
2-2-4-2. 자동차 튜닝 부품 안정성 확보 및 시장 활성화	국토부 산업부	‘13.12월
2-2-4-3. 농식품 전문 펀드 지원강화	농식품부 중기청	‘13.6월
2-2-4-4. 농업진흥구역내 태양광발전시설 허용	농식품부	‘13.11월
2-2-4-5. 갯벌어업 투자 활성화	해수부	‘13.6월
2-2-4. 해양 · 항만 분야		
2-2-4-1. 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 및 운영 활성화	해수부	‘13.9월
2-2-4-2. 항만재개발 민간 투자 활성화	해수부	‘13.6월
2-2-4-3. 마리나 서비스업 육성	해수부	‘13.12월
2-3.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·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		
2-3-1.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		
2-3-1-1. 설비투자펀드 규모 확대	산업부	‘13.7월
2-3-1-2. 중소기업 설비교체 지원	산업부 중기청	‘13.7월
2-3-1-3.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선	산업부	‘13.6월

추진 과제	소관부처	추진일정
2-3-2. 중소기업 창업 및 가업승계 지원 등		
2-3-2-1. 신설법인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확대	기재부	‘13.9월
2-3-2-2. 가업상속 공제제도 요건 완화	기재부	‘13.12월
2-3-2-3. 상생협력 투자재원 출연 세제지원 지속	기재부	‘13.9월
2-3-3. 중소기업 지식활용 및 에너지 투자 확대		
2-3-3-1. 기술융합 중소기업 지원 확대	금융위	‘13.10월
2-3-3-2. 지식재산권 담보 금융지원 활성화	금융위	‘13.10월
2-3-3-3.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지속 지원	기재부	‘13.9월